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75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동부, 중부, 남부, 북부) 통합 운영에 따라 교육원 명칭을 변경하고, 남부기술교육원 운영 중단(2026. 3. 1.부터)에 따라 운영기간을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에 따라 각 기술교육원의 명칭을 변경 (안 제5조, 별표)

나. 문구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제5조 제2항과 관련, 우선 입학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한 '북한이탈주민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직업교육 훈련생 선발시 가점(5점)을 부여하고 있어 미반영함

(가점 대상 : 외국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장애인 및 중장년 전직 특화교육과정 50+캠퍼스 수료자)

※ 제11조 제1항과 관련,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고려에 대한 제안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려하고 있으므로 미반영함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갈등관리가 가능한 사업)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2. 15. ~ 3. 6.) 결과: 의견있음(미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조근희(☎2133-546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중 시장은”을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중부·남부기술교육원”을 “기술교육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1항”으로,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해”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3호 및 별표 개정 규정은 2025. 3. 1.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동부캠퍼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83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북부캠퍼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81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는 2026. 2. 28.까지만 운영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입학자격 등) ① (생 략)	제5조(입학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중에서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시설에 입학 할 수 있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경기도에서 위탁하는 교육훈련생. 단, 이 경우에 위탁교육은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에서 시행한다.	3. -------------------------. 다만----------------------------- 기술교육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생 략)	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규칙------------.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	④ ----------------------

육훈련생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을 하여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교육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범위---. --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사람 중-------------------------.
1. 직업교육훈련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직업훈련에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	1. --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 한 차례만 --.
[별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별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83
서울특별시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
서울특별시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길 70가 81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동부캠퍼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83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북부캠퍼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81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는 2026. 2. 28.까지만 운영한다.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남부기술교육원을 서울 지역 기술교육원으로 분산 이전하는 사항으로, 자원 이전 및 운영시스템 통합 등이 수반되어야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남부기술교육원의 분산 이전에 따라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건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조근희(☎02-2133-5463)